

# 적하보험

CHUBB®



축적된 해외 언더라이팅 기법을 통한 질 높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계 54개국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해상 및 항공운송 이에 수반되는 내륙운송 중 화물이 멸실, 손상되는 경우 또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화물의 소유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웹베이스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증권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고, 전문 위험관리인에 의한 위험 분석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## 주요 보상하는 손해

- 수출입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(멸실, 손상)
- 선박의 화재, 폭발, 좌초, 좌주, 침몰, 전복
-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
- 본선, 부선,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, 접촉
- 피난항에서의 화물하역
- 공동해손의 희생손해
- 지진,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

- 해수 및 담수 침수피해
- 하역작업 중 발생한 포장단위단 전손
- 공동해손 분담금, 구조비
- 쌍방과실 충돌(Both to Blame Collision) 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
-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

## 추가위험 약관

- 갑판적 약관(On Deck Clause)
- 기계수선특별약관(Special Replacement Clause)
- 중고기계수선약관(Special Replacement Clause for Secondhand Machinery)
- 상표약관(Label Clause)

부가위험 약관

| 부가 위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화물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도난, 포장단위 화물의 목적지 미도착으로 인한 손해                | 모든 화물      |
| 비, 담수 등 해수 이외의 물로 젖은 손해                     | 섬유, 잡화     |
| 하역작업 중 갈고리 사용으로 인한 손해                       | 섬유, 가죽     |
| 유류·산등 선내 청소 불충분으로 인한 오손 및 타 화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 | 모든 화물      |
| 깨지기 쉬운 화물에 대한 추가 담보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리, 도자기    |
| 누수, 부족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적 화물, 액체류 |
| 화물 표면이나 내부가 구부러지는 손해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계, 금속류    |
| 갑판에 적재되는 화물의 투하 및 갑판 유실                     | 원목, 플랜트    |
| 해수 및 담수에 의한 녹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속류        |

가입 대상

수출입 기업, 화물 운송업자 등

가입 유형

개별보험: 선적단위별 보험가입  
포괄보험: 연간 선적 물량에 대한 포괄적 보험가입

보험 가입시 필요서류

청약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

처브그룹 소개

처브그룹은 세계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.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, 특종보험, 개인상해보험, 건강보험,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,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, 지급하고 있습니다. 풍부한 보험 전문 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, 가족,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, 광범위한 판매 채널,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.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, 특종 보험, 리스크 관리 서비스, 고액자산 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,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, 상해보험, 건강보험,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 보험,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.

미화 1,95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22년 기준 미화 468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능력 AA 등급을, AM Best의 A++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(Chubb Limited)는 뉴욕증권거래소(NYSE: CB)에 상장되어 있으며, S&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처브그룹은 취리히, 뉴욕, 런던,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, 전 세계 약 34,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

Contact Us

라이나손해보험  
(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),  
처브그룹 컴퍼니  
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 
라이나타워 14, 15층  
대표번호: +82 2 2127 2400  
대표팩스: +82 2 6913 8498  
www.chubb.com/kr

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 
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,  
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.

최선아 부장  
Head of Marine & Fine Art  
O +82 2 2127 2466  
E Sun-A.Choi@Chubb.com

김진복 차장  
Marine Senior Underwriter  
O +82 2 2127 2352  
E Jinbok.Kim@Chubb.com

박지훈 과장  
Marine Underwriter  
O +82 2 6711 5795  
E Jihoon.Park@Chubb.com

김지연 대리  
Marine Underwriter  
O +82 2 6711 5712  
E Jiyeon.Kim1@Chubb.com

양준호 대리  
Marine Underwriter  
O +82 2 6711 5786  
E Jun-Ho.Yang@Chubb.com

정명환 대리  
Marine Underwriter  
O +82 2 6711 5727  
E Myeonghwan.Jeong@Chubb.com

홍태민 사원  
Marine Underwriter  
O +82 2 6711 5741  
E Tae-Min.Hong@Chubb.com

이재인 사원  
Marine Underwriter  
O +82 2 6711 5753  
E Jae-In.Lee@chubb.com

김종민 사원  
Marine Underwriter  
O +82 2 2127 2442  
E Jong-Min.Kim@Chubb.com

Chubb. Insured.<sup>SM</sup>

## 알아두실 사항

###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

#### 계약전알릴의무

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(질문서를 포함합니다)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

#### 계약후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,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##### [예시]

1.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,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
2.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(예: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,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)

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##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 사항을 반드시 확인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(약관)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청약의 철회

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, 동법 시행령 제37조,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)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
다만,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
[일반금융소비자]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.

[전문금융소비자]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,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 소비자로서, 구체적인 범위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# 계약의 취소

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,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- 계약취소 신청 주소: (03156)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.15층  
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(전화: 02-2127-2400)
- 가까운 영업점 위치: (03156)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.15층  
(고객서비스센터)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(전화: 02-2127-2400)

#### 보험금 지급 사유의 통지

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.

####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

##### 보험금의 지급

보험자는 지급보험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 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.

- A.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
- B.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경우

##### 보험금의 지급제한

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 면책 사항(이 일반 면책은 증권 전 부분에 적용됩니다.)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계약의 해제 · 해지에 관한 사항 (해지환급금 안내)

##### 계약의 해지 사항

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1.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
2.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
3. 계약자,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4.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

##### 계약의 해제 사항

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,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,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(상법 제650조 제항).

보험계약이 효력 상실,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
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: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: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

####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

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납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
#### 예금자 보호 안내

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“1억원까지” 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“1억원까지”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으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####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

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처리 결과에 의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- 회사 전화번호: 1566-5800 (고객서비스센터)  
인터넷 주소: www.chubb.com/kr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
(www.fss.or.kr/국민없이1332/)  
우: 150-743 서울 서영동 포구여의대로 38

####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 사항

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, 보장내용(면책기간 재적용 등)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###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

계약자는 보험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적합성 원칙) 제3항, 제18조(적정성 원칙) 제2항, 제19조(설명의무) 제1항 및 제3항, 제20조(불공정영업행위금지) 제1항 또는 제21조(부당권유행위)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, 동법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(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)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다만,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·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